
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1-4호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행정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01월 27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행정처분대상

가. 성 명 : 지 현 호

나. 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휴먼시아APT 2403-1205

2. 처분내용 : 정보통신기술자 업무정지 6개월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(공사업등록증 대여금지)

4. 처분근거 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(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)

5. 처분일자 : 2011.01.27.